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1

발의연월일: 2020. 7. 21.

발 의 자:최혜영·고영인·박성준

김민철 · 신동근 · 전혜숙

인재근 • 이광재 • 이상헌

정청래 • 우원식 • 이탄희

이워택 • 윤재갑 • 아침(비)

박영순 • 최종유 • 김경만

오영환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종료 후 가정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 하는 사후관리 시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의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방지 등을 통한 아동보호를 강화하 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의 강화와 아동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수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설치·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45조제2항 단서 삭제, 제7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제75조제2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2의 제목 중 "등의권고"를 "등 제공"으로 하고, 제2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하며, 제29조의2제1항 전단(종전의 제29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전단)중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제75조제2항 중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1. 제29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 2.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
한 상담·교육 <u>등의 권고</u>) 시	한 상담·교육 <u>등 제공</u>) <u>①</u>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	
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	
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u>받</u>	<u></u> <u></u>
<u>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u> . 이 경	여야 한다
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2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 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u>다</u> 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 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 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 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2의2.(생 략)3. ~ 7.(생 략)제75조(과태료)① (생 략)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

	/rl 1l
	<단서
<u>삭제></u>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 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 람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 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 해당하는 자에게는------

- 1. 제29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 위자
- 2.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 ③ ④ (현행과 같음)